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2.22.)
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1740(2020.12.6.)
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1739(2020.12.6.)
 라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2186(2020.12.9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.22일 정례회의에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성탄절 ·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 · 파티, 관광 · 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에 2020. 12. 24(0시)부터 2021. 1. 3(24시)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3. 중앙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,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*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방역 조치사항은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“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”를 참고해 주십시오.

- 아 래 -

○ 적용 기간 : 2020년 12.24(0시) ~ 2021년 1.3(24시)까지

○ 대상 지역 : 전국

 *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, 조치 강화만 가능

1)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전국 종교시설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.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2)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전국 식당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,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

붙임2.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3) 파티룸 집합금지

○ 대상 시설 : 전국 파티룸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 내용 : 집합금지

붙임3.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1부

4) 영화관 ·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전국 영화관 · 공연장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4. 전국 영화관 ·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5) 백화점 · 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전국 백화점 · 대형마트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5. 전국 백화점 · 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6)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

○ 대상 시설 : 전국 겨울 스포츠시설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6. 전국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

7)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전국 숙박시설
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7.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8) 취약시설

○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,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

9) 관광명소 관리

○ 해맞이 ·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

- ‘출입금지’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,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

4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

○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

- 각 지자체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,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보건복지부장관인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17개 시도

주무관	행정사무관	생활방역팀장	전략기획반장
강재희	**이성경**	**김정숙** 2020.12.22.	**손영래**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**이기일**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**강도태**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**박능후**	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3875 (2020. 12. 22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http://ncov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1722 팩스번호 044-202-1971 / jaehuekang@korea.kr / 비공개(5)